

지정번호: 제 호

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

1. 기 관 명:

2. 대 표 자: (생년월일:)

3. 소 재 지:

4. 사업 내용:

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13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산업통상부장관

직인